

[국책과제분쟁] 국가 R&D 과제에서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연

구실 공동경비로 사용 + 개인적 사용 없음 -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

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



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을 모두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하

고 그 일부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공동관리 잔액이 남아 있

는 상황 - 학생 인건비의 횡령 성립 여부

법원 판단 -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나) 또한,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참여연구원이 받았으면, 그 연구원이 추후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관여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의 규정이나 발주처와의 계약상 연구원들이 자신의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가 그 관리를 담당 교수에게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연구실에 속한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 진학 시에 약속한 용돈 명목의 돈을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재원이 되는 연구과제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으로 등록되는지 여부나 참여율에 따라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연구비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연구실에 일정한 소속감을 갖고 적은 금액이라도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연구활동에 전념하고자 피고인에게 연구보조원으로서 받은 연구비 등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들 대부분은 연구활동을 하는 동안 풍공학연구실 또는 E연구소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였는데 식비나 비품 구입 등 연구실 운영 및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해 따로 지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점, ④ X, AI, AJ, AK, V는 원심 법정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는 것 이외에 나머지 연구비는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I, AJ, AK, V는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측 증거로 제출됨), W은 원심 법정에서 매월 받은 20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의 공동경비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식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었

고,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W에게 나머지 돈의 공동경비 사용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조차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검사는 피고인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제공받은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학생들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 158,707,190원 중 상당 금액은 연구실 환경개선비 및 연구실 운영비 등의 공동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액이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따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용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함부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실무적 포인트 - (1) 공동관리 금액에 대한 횡령 책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 액수도 중요, (2)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용 전혀 없다면 전액에 대한 횡령죄 불인정, (3) 일부 금액의 개인적 사용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만 횡령 책임, (4)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제외,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

국책과제,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